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나207852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나20785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9190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운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0. 1. 9.

판결 선고 2020. 2. 13.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919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설

판사김혜선

판사김보라